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술활동 육성·지원, 학술자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등 규정〉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55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학술활동의 육성·지원	3
2. 연구윤리 실태조사	3
3.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지영 의원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9.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

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
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학술활동의 육성·지원(안 제9조)

개정안은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학술진흥법」 제9조는 학술단체활동에 대한 촉진 및 장려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임.

인문사회 분야 학술풍토 조성에 있어서 자율적인 학술기관 및 단체의 역할의 중요성 및 과학기술 분야 학술활동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재정지원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현행	개정안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	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단체활동을 <u>촉진하고 장려</u>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u>촉진하고 장려</u>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u>육성하고 지원</u>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u>육성·지원</u>을 위하여 학술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를 <u>육성</u>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	--

교육부는 개정안은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2. 연구윤리 실태조사(안 제15조의2)

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의 발생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윤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연구윤리 실태조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행령과 지침에 근거하여¹⁾ 매년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²⁾.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②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의 장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⑥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조사는 ①(조사대상) 1년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1개교³⁾를 대상으로 ②(조사기관) 한국연구재단에서 ③(조사방법)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④(조사내용 및 기준) 대학의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부정행위 예방, 특수관계인 관리규정 및 현황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별로 조사를 하고 있음(참고자료 1 참조).

또한, ‘연구윤리정보포털⁴⁾’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조사·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포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관련 정보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교육자료와 학술자료, 가이드라인 등임.

개정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특히,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참조

3) 2022년 기준(2023년 조사)

4) 연구윤리정보포털 (<https://www.cre.or.kr/>)

- 교육부는 대학등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 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내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설치함.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이견없음

- 현행 지침에 따른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 이견없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신중검토
 -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 신설의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임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1건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2204352	백승아의원 (2024.9.26.)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적근거 마련 등(안 제15조의2 등) * 서지영의원안과 차이(제15조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 포함)

3.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안 제16조의2)

개정안은 학술지원사업⁵⁾의 성과를 대학등이 소유·관리하며, 예외적으로 국가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임(안 제16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이하 “학술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성과의 유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성과를 대학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학술진흥법」은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규정만을 두고 있음⁶⁾.

이에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례를 토대로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의 원칙과 예외, 위탁관리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구체적으로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는 대학등이 원칙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연구자 또는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 등 법률로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공모시 성과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이 경우 대학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과 소유 및 관리체계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⁷⁾.

6) 제16조(학술 성과의 활용) 교육부장관은 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학술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개정안 비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성과 소유 원칙(제1항)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대학등
예외(제2항)	연구자가 소유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소유	연구자 또는 여러 대학 공동소유
예외(제3항)	국가소유 예외 (국가안보 등의 경우 1~4호 + 국가소유가능성 미리 공지)	국가소유 예외 (좌동)
제4항	국가소유시,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관리	국가소유시, 대학등에 위탁관리
제5항	성과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함	좌동

교육부는 개정안은 학술성과의 소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⁸⁾.

문 의 처
02)6788-5185

-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16조의2제4항의 위탁관리기관에 대학등 외에 “전문기관”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술진흥법상 ‘대학등’에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참고자료】

1. 학술진흥법령에 따른 「대학 윤리조사⁹⁾」 개요

I. 조사 목적

-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현황 등의 체계적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윤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제공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제6항

II. 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 조사 대상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 등 총 411개교*
*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기준
- 조사 기간 : 2023년 6월 27일~2023년 8월 11일(5주)
- 조사 기관 : 한국연구재단
- 조사 방법 :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항목별로 각 대학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 응답 현황

[표 1] 응답 현황

구분	대학 구분		대학 수	응답대학 수
4년제	대학	대학교	190	161
		산업대학	2	2
		교육대학	10	10
		방송통신대학(대학)	1	1
		사이버대학(대학)	17	11
		기술대학	1	0
		각종대학(대학)	2	1
		소계(A)	223	186
전문대학 등	전문대학	전문대학(2~4년제)	135	92
		사이버대학(전문대학)	3	2
		기능대학	9	0
		소계(B)	147	94
	대학원 대학	일반대학원	1	0
		전문대학원	39	19
		특수대학원	5	2
		소계(C)	45	21
대학 합계(A+B+C)			415	301

9) 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 2023.12. 참조

III. 조사 내용 및 기준

• 대상 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표 2] 조사 내용 및 기준		
구분	항목	세부 항목
연구윤리 제도 및 조직	연구윤리 규정 및 지침 현황	연구윤리 규정 제정 유무, 연구부정행위 범위, 검증기간, 유형별 연구부정 검증시효, 검증시효 규정, 검증시효 규정 개정 계획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횟수, 외부전문가 참여, 조사위원 구성 규정, 조사위원 규정 개정 계획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 현황	연구부정행위 제보접수 방법, 온라인 신고 공개동의 여부
	연구윤리 행정(담당)부서 운영 현황	연구윤리 행정부서, 상위 부서 위치, 설치연도, 담당인력 수, 담당자의 겸업 여부
	연구윤리 활동경비 사용 현황	활동경비 사용 현황, 활동별 사용예산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판정 현황	학문분야, 직위, 연구부정행위 년도, 연구부정행위 유형, 연구물 유형, 판정결과, 판정에 따른 학내 처분 결과
연구윤리 교육·예방, 확산	연구윤리 교육 현황	교육 대상, 당해연도 교육 실행 여부, 실시건수, 실시형태
	표절예방현황	문장 유사도(표절) 검색 프로그램 사용여부, 석박사학위 논문 제출시 프로그램 의무 활용여부, 프로그램 명칭
	연구부정행위 예방 활동 현황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 시 서약서 제출, 교육이수증 제출, 문장 유사도 검색 결과지 제출,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교육 강화, 내외부 연구과제 수행 전 연구참여자 대상 서약서 및 교육 이수증 제출, 연구윤리 상담 및 자문부서 운영
	정부 연구윤리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활용 현황	정부 연구윤리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활용 여부,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 활용 형태
특수관계인 관리 규정 및 관리 현황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관리 근거 규정 마련 유무	제정연도, 근거 규정·지침 명칭 및 조항, 연구 참여 전 신고, 연구 수행 중 관리 사항 안내, 공동연구 성과발표 전 신고, 공동연구 성과물 DB 관리, 근거규정 제정 중 또는 제정안함 유무

IV. 조사·분석의 한계

- 대학 연구윤리활동 실태조사는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조사·분석 상의 한계가 있음
 - 조사 세부항목별로 미응답 대학이 있을 수 있으며, 응답대학 수는 분석 내용 및 통계표 등에 표기
 -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나, 전수 회수의 한계로 전년 분석 자료와의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음
 - 대학 작성자의 작성기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자료 입력 가능성 있음